

모든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합니다.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 교육은 준비되어 있는가?
- 유아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



일 시: 2026년 7월 16일(목) 16:00

zoom토론회(Zoom 접속 | 회의 ID : 846 7285 8298 | 암호 : 1234

주 최

영유아를위한전국희망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전국장애아동보육제족
기관협의회,전국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영유
아교사협회,

후원

링크아이

모든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합니다.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 교육은 준비되어 있는가?

- 유아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

 일 시 2026. 7.16. (목) 16:00	 운영방식 실시간 온라인 (Zoom)	 공동주최 • 아이들이행복한세상 •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 영유아교사협회 • 영유아를위한전국희망연대 •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	---

시간	내용	참석자
사회(좌장) 조현정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 공동대표)		
16:00~16:05	개회식 및 축사 • 개회사 • 축사	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6:05~16:30 (25분)	주제발표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 교육은 준비되어 있는가? - 유아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
16:30~17:10 (40분)	지정토론 (패널별 5분 발표)	• 교육부 관계자 (영유아 정책총괄과) • 강성리 (국립한경대학교 유아특수보육과 교수) • 김선숙 (햇살아래보듬이나눔어린이집 교사) • 김주리 (사단법인 제주아이특별한아이 대표) • 석나운 (공립 꿈두리아어린이집 교사) • 신명옥 (해림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 • 정혜원 (감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교문)
17:10~17:2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자, 토론자 및 참석자 전체
17:25~17:30	폐회	참석자 전체

 참여방법 (Zoom 접속)	회의 ID 846 7285 8298 암 호 1234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후 접속
---	---	--

※ 세부 일정 및 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순서	내 용	
1	토론회 참연 안내 - 사회 : 조현정 (광운대학교교수) 영유을위한전국희망연대 상임대표 개회사 및 축사	
2	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3	주제발표 :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 교육은 준비되어 있는가?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교수)	4
4	지정토론	20
	. 교육부 관계자 . 강성리 (국립한경대학교 유아특수교육 교수) . 김선숙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교사) . 김주리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대표) . 석나윤 (공립 곰두리 어린이집 교사) . 신명옥(혜림장애영아전문원 이사) . 정혜원 (감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사) . 조선경 (전국장애아동어린이집협회 회장)	
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자, 토론자 및 참석자 전체	

축사

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주제발표

같은 아동, 동일한 교육권

-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은 준비되어 있는가? -

최윤희(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현재까지 우리는 '유치원'은 교육 중심, '어린이집'은 보육 중심이라는 역사와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지 않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책임체계를 의미한다.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 교육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는 개별 기관의 문제를 떠나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명칭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신에 **“영유아학교(가칭)”**라는 새로운 이름을 제안한다. 새로운 제도에 맞춰 “영유아학교, 영유아특수교사(가칭)”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한다.

I. 준비되지 않은 장애영유아 교육권

1. 유보통합은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일원화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유보통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통합하려는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유보통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정책으로 이해한다. 물론 행정과 제도의 통합도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영유아의 입장에서 유보통합의 본질은 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교육권의 일원화에 있다.

장애영유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을 이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동일한 교육과 지원을 보장받는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이 다를 뿐, 장애영유아에게 보장되어야 할 교육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성공은 기관의 명칭이나 운영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책임 아래 모든 장애영유아에게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원화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1) 어린이집에서의 의무교육 간주 문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 자는 의무교육

대상이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4)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출처: 교육부(2025). 202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p47.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에게도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 역시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아는 360명,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는 8,222명으로 총 8,582명이다. 반면 2025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10,105명으로, 의무교육 대상 장애영유아의 상당수가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다.

같은 의무교육 대상이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보장되는 교육권도 과연 동일한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기관의 지원체계를 비교해 보았다.

<표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지원 비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책적 시사점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지원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관리 주체	교육부 → 시·도교육청	교육부(보육정책 총괄) → 지방자치단체(운영·관 리)	행정체계 차이로 지원 절차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발생
교육의 성격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만 3~5세	보육 중심(교육 기능 포함) 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 교육권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함
의무교육 대상	장애유아 의무교육 대상	장애유아도 의무교육 대상	같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동일한 교육권 보장이 원칙
특수교육 지원	특수학급, 통합학급,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아통합·장애전문 어린이집 중심 지원	지원체계가 달라 부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

개별교육계획 (IEP)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운영	법적 의무는 없으나 개별화 지원 운영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기준의 일원화 필요
	담당 교사	유아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지원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아동센터, 복지기관 등	유아특수교사 확보와 전문성 강화 필요
	가족지원 중심	발달재활서비스, 가족지원사업 등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부모가 직접 조정하는 경우가 많음
국가의 과제	교육권 보장	보육권과 교육권의 통합적 보장	의료·교육·복지 연계체계 구축 필요
			기관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출처: 교육부(2025). 『2025 특수교육통계』, 『202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이지만, 적용 법률과 관리체계, 교사 자격, 특수교육 지원, 개별교육계획 운영, 가족지원 등 교육권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에서 여전히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아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개별교육계획(IEP), 순회교육 등 국가 특수교육체계 안에서 지원받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장애아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같은 의무교육 대상이라도 교육권을 보장하는 기준과 지원체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2) 기관 간/지역 간 차이와 불균형 문제

<표2>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간 현황

	세부 기관	장애아 수(명)	내부 비율(%)	교육권 관점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
유치원	공립	4,971	60.5	공립 중심의 특수교육 인프라 집중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지원 기반 강화 필요
	사립	2,391	29.1	특수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부족으로 교육지원 격차 발생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6,857	49.8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필요
	장애아전문	6,170	44.8	치료·교육 기능과 특수교육 연계 강화 필요
	일반	740	5.4	특수교육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

출처: 2025 특수교육통계; 202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25 보육통계(보육정책 DW시스템)를 활용하여 발표자가 재
[2026 장애영유아교육권 보장을 위한정책토론회]

구성 및 분석.

※ 유치원 비율은 일반유치원 재원 장애유아 기준(교육부 자료)이며, 어린이집 비율은 장애영유아 총 13,767명 기준으로 산출.

※ 어린이집 장애아 인원(13,767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 방과후 보육 인원이 포함된 수치임.

<표2>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 기관 내부에서도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 체계의 통합을 넘어, 기관 내부의 지원 격차까지 함께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 간 특수교육 인프라의 격차가 크다. 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8,222명 가운데 4,971명(60.5%)이 공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2,391명(29.1%)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장애유아의 교육이 공립유치원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특수교육 인프라가 공립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부족, 유아특수교사 확보의 어려움, 재정적 부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결과 많은 부모들은 가까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기보다, 특수교육지원이 가능한 공립유치원의 대기나 원거리 통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기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 보장의 차이가 부모의 선택을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어린이집 역시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장애영유아의 49.8%(6,857명)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44.8%(6,170명)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5.4%(740명)는 일반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중도중복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또래와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일반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과 특수교육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기관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 기관 유형에 따른 국가 지원체계의 차이로 인함이다.

셋째, 아래 <표3>의 장애통합어린이집과 장애전문어린이집의 지역별 장애아동 현황을 비교해보면 경기도(2,623명)와 서울(1,856명)에 통합어린이집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 이는 지역별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수급 및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격차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는 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유형에 따라 장애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있다. 장애영유아는 전국 어디에서나 태어나지만,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는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에서 태어난 장애영유아와 지방에서 태어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2.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실현하는 사람은 영유아특수교사(가칭)이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은 법으로 선언된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권은 아동이 실제 교육을 받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리고 그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사람이 바

로 영유아특수교사(가칭)이다.

영유아특수교사(가칭)는 장애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교육계획을 수립하며, 통합교육과 가족지원을 실천하는 교육 전문가이다(UNESCO, 2024). 따라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논하면서 영유아특수교사(가칭)를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면 교육권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양성 체계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1) 영유아특수교사(가칭) 부족 문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가 확인된 이후의 교육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14조는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8조는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보호자의 조기교육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은 조기발견, 조기선별, 조기교육(조기개입)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발견만으로 교육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조기발견 이후 발달 수준을 교육적으로 평가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계획하며, 가족과 협력하여 조기개입을 실천하는 영유아특수교사(가칭)가 있어야 비로소 교육권이 완성된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전체 수검자의 3.3%는 '심화평가 권고', 12.3%는 '추적검사 요망'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 위험이 있는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조기발견 이후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모든 영유아가 장애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 위험이 확인된 영유아에게는 가능한 한 빠른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발견은 의료 체계로 부터 시작되지만, 조기개입은 교육체계에서 완성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발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이를 특수교육 서비스와 연결할 영유아특수교사(가칭)가 부족하다면, 조기발견은 교육권으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유보통합 시대에는 영유아건강검진과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실천할 영유아특수교사(가칭)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은 장애 진단 이후가 아니라, 발달 위험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2) 유아특수교사 양성 규모의 절대적 부족 문제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발달 위험 영유아는 제외하고 <표3>의 현황을 살펴 보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8,582명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합어린이집 6,857명, 장애전문어린이집 3,248명을 포함하면, 실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영유아는 1만 105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영유아특수교사(가칭)는 전국 12개 대학에서 연간 약 198명만 양성되고 있다. 즉, 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유아는 1만 명이 넘는데, 신규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양성은 연간 2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성 규모로는 유보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단순히 양성 인원이 적다는 것만이 아니다. 저출생으로 학부 입학정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학부 중심 양성체계만으로는 증가하는 현장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결국 교육권을 실현해야 할 영유아특수교사(가칭)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3> 지역별/기관별 특수교육대상(장애) 영유아 인원 및 유아특수교사 양성 인원

(단위: 명)

지역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성 안원	대학면 (학과및전공명)	기타
		통합	전문			
서울	863	1,856	95	2/35	이화여대(특수교육과)	이화여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		서울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부산	577	281	213	?		부산대 교육대학원(유아특수교육전공)
대구	505	106		35	대구대(유아특수교육과)	대구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인천	700	645		?		아주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광주	204	25		-		
대전	285	110		-		
울산	243	86		-		
세종	173	42		-		
경기	2,053	2,623		20	중부대(특수교육과)	
				?		용인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강원	228	124		-		
충북	424	49		13	국립한국교통대(유아특수교육학과)	
				2/9	한국교원대(특수교육과)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2/46	국립공주대(특수교육과)	국립공주대 교육대학원(유아특수교육전공)
충남	520	145		40	나사렛대(유아특수교육과)	
				40	백석대(유아특수교육과)	
				?		순천향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전북	394	42		35	우석대(유아특수교육과)	우석대 교육대학원(유아특수교육전공)
				?		전주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15	전남대(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전남	286	92	327	?		조선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2/20	세한대(특수교육과)	
경북	438	130	374	?		영남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경남	502	248	246	2/25	인제대(특수교육과)	국립창원대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제주	187	253	70	-		
합계	8,582	6,857	3,248	198+?	12개 대학	14개 교육대학원 (?명)
			10,105			

출처: 교육부(2025). 『202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24년 보육통계(2024.12.31. 기준); 2025 특수교육통계 부록 「Ⅷ-8. 어린이집 장애아 현황」을 활용하여 재구성.

3) 지역별 교사 양성 체계의 불균형 문제

<표 3>는 지역 간 양성 체계의 격차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제주 등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양성 학부가 없으며, 일부 지역은 교육대학원 과정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충남, 충북, 전북, 대구 등은 학부와 교육대학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양성 기반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장애영유아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영유아특수교사(가칭)를 만날 기회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4) 어린이집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수급 문제

현재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양성 규모는 주로 특수학교와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기준으로 논의되어 왔다. <표 3>에서 보듯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는 통합 어린이집 6,857명, 장애전문어린이집 3,248명으로 총 1만 명이 넘는 장애영유아 교육 수요가 존재한다. 2026년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장애영유아 담당교사가 4,207명 가운데 특수교사(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513명(12.2%)에 불과하여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가 의무교육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담당할 교사 확보 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행정체계의 통합을 넘어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II. 장애영유아 교육권 찾기

1. 유보통합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정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만 3세 이상 장애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유보통합 시대에는 '의무교육으로 간주한다'는 수준을 넘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도 국가가 동일한 기준으로 특수교육을 지원하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의무교육 대상이라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지원과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도 국가의 특수교육지원체계 안에서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유보통합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영유아보육법」 개정

유보통합의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하나의 국가 책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육행정을 교육청 중심의 교육행정과 연계하여 하나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야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기준도 일관되게 마련할 수 있으며, 교원양성, 재정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별화교육계획(IEP), 가족지원 등도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유보통합의 종착점이 아니라,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3) 「정부조직법」 개정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관리 주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총괄하지만,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교육청이 각각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장애영유아 정책도 계속 교육과 보육으로 나뉘어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교육부 중심의 국가 책임체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애영유아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기획·조정하고, 교원양성, 재정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가족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영유아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장애영유아 정책은 교육, 보육, 의료, 복지, 가족지원 등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 결과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유아특수교사 수급, 통합교육, 가족지원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내에 「장애영유아지원과(가칭)」를 설치하여 장애영유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

영유아정책국내 장애영유아지원과 설치



출처: 2026년도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기관장 연수자료.p.41.

이 전담부서에서는 조기발견-조기개입-의무교육-취학 전환까지 이어지는 생애초기 지원체계를 총괄하고, 유아특수교사 수급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및 관계부처 협력까지 함께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기관을 통합하는 정책을 넘어, 국가가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교육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지역마다 지원기준과 행정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이원화된 지방 행정체계를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지역 내 모든 영유아를 하나의 교육지원체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한 행정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원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예산 지원, 가족지원 등도 지역별로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장애영유아 교육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통합어린이집과 전문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확보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지역 격차는 결국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 이후에는 국가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과 비수도권의 장애영유아 교육환경 개선, 영유아특수교사(가칭) 확보, 통합교육 기반 구축 등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책임을 하나로 만드는 법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 책임을 하나로 만드는 법이며,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행정체제로 연결하는 법이다. 이 세 가지 법이 함께 개정되어야 비로소 장애영유아에게 '같은 아이에게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2.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실행 기반 구축

유보통합은 기존 기관을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이 아니라, 각 기관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을 국가 교육체계 안에서 발전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은 기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강점을 교육권 보장에 활용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 중심 유보통합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 공립유치원의 특수교육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전체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60.5%를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특수학급, 특수교사, 교육환경 확충이 가장 시급한다. 유보통합 이후에도 공립유치원은 장애유아 특수교육의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분담률은 29.1%이다. 사립유치원의 참여 없이는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확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수학급 설치, 유아특수교사 인건비, 시설개선 등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통합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는 6,857명의 장애영유아가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통합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보육기관이 아니라, 오랜 기간 통합교육을 실천하며 현장의 전문성을 축적해 온 중요한 교육 자산이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영유아특수교사(가칭)를 정식 배치하고 공동담임제를 운영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 아동을 다른 기관으로 이동시키기보다 현재의 통합환경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장애영유아와 가족 모두에게 가장 안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넷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조기개입·중도중복장애지원 거점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는 6,170명의 장애아동이 재원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중도·중복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재활, 치료, 가족지원을 함께 제공해 왔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 유치원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이다. 따라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켜 권역별 영유아특수교육·조기개입센터 또는 00거점형 영유아특수학교(가칭)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과 재활, 가족지원이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일반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에게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반어린이집에도 약 740명의 장애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이들 영유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순회교육과 조기개입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유보통합은 기관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기관이 가진 강점을 연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통합교육의 거점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조기개입과 중도중복장애아 지원의 거점으로, 일반어린이집은 순회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때 비로소 모든 장애영유아에게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영유아특수교사의 국가 수급 체계 구축

1) 기존 유아특수교사의 전문성과 경력 인정

현재 어린이집에는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국가가 발급한 유아특수교

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 이들은 이미 국가가 인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교사이며,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장애영유아 교육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새로운 교육지원체계 안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보유한 교사에게는 별도의 자격 취득이나 중복된 교육을 요구하기보다, 기존의 자격과 경력을 인정하여 영유아학교(가칭)의 특수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 처우와 승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공정하게 인정하는 조치이다. 향후 영유아학교(가칭) 체제가 도입된다면, 동일 자격과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대학원의 재교육과정 활용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국가의 특수교육지원체계 안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특수교사(가칭)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부 중심 양성체계와 일부 양성과정의 교육대학원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교육과정의 교육대학원을 활용한 '한시적 영유아특수교사(가칭) 특별양성과정'을 제안한다.

현재 「2025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에 따르면, 양성과정 교육대학원은 14개 대학, 재교육과정 교육대학원은 19개 대학에서 특수교육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재교육과정 교육대학원은 이미 특수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이들 교육대학원에 한시적으로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양성 기능을 부여한다면, 새로운 양성기관을 설립하지 않고도 단기간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교육과정의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근무를 계속하면서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의 전문성을 특수교육으로 확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제안은 교원양성체계를 영구적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다. 유보통합 초기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이다.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재교육과정 교육대학원에 특별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수급이 안정되면 다시 재교육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유보통합은 지금 당장 교사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

요하지만, 재교육과정 교육대학원은 이미 전국에 구축되어 있다. 이제는 기존의 국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영유아특수교사(가칭)를 양성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빠르게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을 활용한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① 교육대학원 영유아특수교사(가칭) 특별양성과정 설치 및 확대
- ② 현직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특별전형 운영
- ③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 ④ 근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야간·주말·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⑤ 교육실습 대체 및 현장실습 인정제도 마련
- ⑥ 수료 후 어린이집과 영유아학교(가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는 국가 수급계획 수립

3) 현직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위한 특별양성과정

유보통합 시대에는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현장에서 장애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해 온 교사들의 경험과 전문성도 국가의 중요한 교육 자원이다.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는 오랜 기간 장애영유아를 지도해 온 교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현장 경험은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원양성체계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전문 자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충분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보통합 특별양성과정'을 제안한다. 특별양성과정은 정규 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온라인 학습이나 학점 이수 중심 과정이 아니라, 특수교육 이론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영유아특수교사(가칭)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자격을 부여하여 어린이집과 영유아학교(가칭)에서 전문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 위에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더하는 과정이다. 만일 이들이 공립학교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용시험과 별도로 현장 경력을 반영한 제한경쟁 특별전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 공개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경험을 갖춘 우수한 교사에게 새로운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유보통합은 어느 교사 집단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교사가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실현하는 전문인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기존 유아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직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며,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사를 양성할 때 비로소 '같은 아이에게 동일한 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다.

결국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는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장애 영유아를 지도해 온 교사들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확대하면서도 교원양성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지키는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제도는 앞으로 수십 년간 장애영유아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같은 아동에게 다른 교육권이 주어지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유보통합은 행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동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같은 아동에게 동일한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그 성공은 같은 아동에게 동일한 교육권이 실현되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교육부(2023). 유보통합 추진방안.

교육부(2024). 2024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부.

교육부(2024). 유보통합 실행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9230&ev=0&m=020402&opType=Ns&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utm_source=chatgpt.com

교육부(2025). 2025 보육통계.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776&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utm_source=chatgpt.com

교육부(2025).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2025). 202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2025). 유보통합 추진현황 및 관련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72779&m=0317&renew=72779&s=moe&utm_source=chatgpt.com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77호).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21228호).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1657호). <https://www.law.go.kr/>

국립특수교육원. (2025). 2025 특수교육통계.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2024). 특수교육 발전방안.

박창현, 박은정, 김경희, 이금규. (2023).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연구보고서 2023-05). 육아정책연구소.

장보협 사회적협동조합. (2026). 2026년도 전국 장보협 기관장 연수.

한국보육진흥원(2024). 유보통합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연구 (비공개 자료).

Division for Early Childhood(2024). DEC recommended practices.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https://divisionearlychildhood.egnyte.com/dl/3QxYd4dvVv?utm_source=chatgpt.com

European Agency for Special Needs and Inclusive Education(2022). Inclus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European Agency for Special Needs and Inclusive Education.

https://www.european-agency.org/?utm_source=chatgpt.com

National Research Council(2001). Eager to learn: Educating our preschoolers.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s://www.nationalacademies.org/publications/9745?utm_source=chatgpt.com

OECD(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education/starting-strong-vi-edaf3793-en.htm?utm_source=chatgpt.com

UNESCO(1994). The Salamanca statement and framework for action on special needs education.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098427?utm_source=chatgpt.com

UNESCO(2024).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24: Leadership in education. UNESCO.

https://www.unesco.org/gem-report/en?utm_source=chatgpt.com

United Nations(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utm_source=chatgpt.com

지정토론

토론 1. 교육부 관계자 (영유아지원관)

토론 2.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

강성리(한경국립대학교)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 모든 영유아가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만 3~5세 의무교육의 대상이며, 영아 또한 무상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가 제시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원 체계 구축과 유아특수교사 양성체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

이번 발표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체계 차이, 지역 간 교육지원의 불균형, 유아특수교사 수급 문제, 그리고 법·제도 개선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영유아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기관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발표의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

현재의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의 차이라기보다 기관 유형에 따라 장애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장애영유아와 보호자의 기관 선택뿐 아니라 만 3~5세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실행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기관을 통합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애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재원하더라도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표자의 입장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특수교육 지원 기반 강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유아특수교사 배치 확대, 일반어린이집을 포함한 특수교육지원체계 마련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발표에서 제안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연계에도 적극 공

감한다. 조기발견은 조기개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교육적 의미를 갖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보육·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전달체계와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이 함께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지원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정비 등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영유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전담 정책 추진체계도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 발표에서 제안한 영유아정책국 내 '장애영유아지원과' 설치 역시 이러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Ⅱ. 유보통합 시대 유아특수교사 수급 및 양성체계에 대한 의견

발표에서는 현재 약 1만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 교육 수요에 비해 전국 12개 대학에서 연간 약 198명의 유아특수교사만 양성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교육대학원을 활용한 특별양성과정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유보통합 초기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조치로서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교원양성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보통합 이후 확대될 장애영유아 교육 수요를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안정적인 유아특수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을 활용한 특별양성과정과 함께 학부 중심의 교원양성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논의는 기존 양성체계 안에서 단기간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유보통합 이후 교육과 보육의 체계 변화와 장애영유아 교육 수요 확대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원양성체계를 함께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저출생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감소하고, 유보통합 이후 보육 관련 학과를 비롯한 영유아 관련 전공의 교육과정 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은 유아특수교사 양성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유아교사와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학 가운데 유아특수교사 양성이 가능한 교육 기반을 갖춘 대학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존 대학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대학의 기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표에서 제시한 지역별 양성체계의 불균형 문제 역시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강원과 제주에는 유아특수교사 학부 양성과정이 없으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학부와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장애영유아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안정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모든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유보통합 시대

야 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교원수급 계획과 함께 지역별 양성기관의 균형 있는 배

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발표에서 제안한 교육대학원 특별양성과정은 유보통합 초기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학부 양성체계 확대, 지역별 양성기관 확충,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교원양성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별양성과정은 단순한 자격 취득 기회의 확대가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유보통합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질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체계의 통합이 아니라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유형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법·제도 및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유아특수교사 수급과 지속가능한 교원양성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교육지원체계와 교원양성체계가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장애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재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보통합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론 3.

하나의 울타리, 같은 시작점: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를 위한 공정한 출발선을 기대하며

김선숙 (해맑음아동발달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를 위한 공정한 출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유치원 정교사로 12년, 장애통합어린이집 일반교사로 4년을 근무했고, 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지금은 어린이집 장애통합반을 담당하는 유아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20년 차 교사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두 기관의 울타리를 모두 경험했고,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현장을 모두 거쳐 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려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모든 장애영유아가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영유아의 교육은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영역이며, 그 교육권은 선택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보통합이라는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보통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는 정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보통합의 본질이 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교육권의 통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영유아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교육받든 동일한 교육권과 전문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절실한지는 통계가 보여줍니다. 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8,258명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보육통계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장애영유아는 1만 명이 넘습니다. 의무교육 대상 장애영유아의 상당수가 어린이집에 있는 것입니다. 법 제19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이 이미 동등한 교육권을 전제하고 있는데, 같은 의무교육 대상인 두 아이가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교

육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로 근무하던 12년 동안 다양한 발달 특성을 가진 유아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또래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 했지만, 장애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늘 고민했고, 전문적인 특수교육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자주 느꼈습니다.

이후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일반교사로 근무하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함께 한 학급을 운영했습니다. 함께 아이를 관찰하고 행동의 의미를 고민하며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장애가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때 자신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이 경험은 장애유아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유아들 역시 한 교실에서 함께 놀이하며 친구의 다름이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웠습니다. 통합교육은 어느 한쪽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교실 안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한계에 답하기 위해 저는 특수교육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 특수교육의 전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아특수교사로서 한 교실에서 일반교사와 협력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통합교육을 지원하며, 부모와 전문가들과 함께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꾸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은 법 조문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현장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여전히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유아특수교사는 전국에서 연간 250명 내외로 양성될 뿐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안정적인 신분과 처우가 보장되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임용을 선택합니다. 낮은 급여와 긴 근무시간, 보조 인력조차 부족한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선택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특수교사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장애영유아를 담당하게 되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충실히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로 근무하는 저 역시 이 현실을 매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은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지금 통합 현장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린이 집의 장애영유아 교육은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만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계적인 전문성입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문이 넓어지면서 자격자 수는 늘었지만, 자격증의 수가 곧 전문성의 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유아를 관찰하고,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량은 단기간의 과정으로 길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양성 체계 사이의 간극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유보통합은 이 간극을 제도적으로 메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른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장애영유아는 자신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관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의 교육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아특수교사의 양성과 배치를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은 결국 교사를 통해 실현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교육과정이 마련되어도, 아이 곁에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교사가 없다면 교육권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연간 250명 내외라는 지금의 양성 규모로는 유보통합 이후 늘어날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야만 개별화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권이 현장에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유아특수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현장에는 특수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오랫동안 장애영유아를 지도해 온 유치원 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이 많지만, 지금의 교원양성체계는 이 축적된 경험을 전문성으로 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과 특별양성과정을 통해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특혜가 아닙니다. 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대학원은 이미 전국에 갖춰져 있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 부족을 해결하면서 현장의 경험을 교육의 자산으로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저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12년의 유아교육 현장 경험 위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모든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유보통합 시대

의 전문성을 쌓았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이 만났을 때 교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은 앞으로도 법 조문 속에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유보통합은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가 어디에서든 같은 교육권을 보장받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 교육권은 아이 곁에서 실천하는 교사를 통해 비로소 아이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의 성공은 전국 어디에서나, 어떤 기관에서나 우리 아이가 '준비된 전문 교사'를 만날 수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20년 전 유치원 교사로 첫발을 내딛던 날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던 아이들과, 오늘 아침 통합반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 주던 아이들의 눈빛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준비된 교사의 손을 잡고 자신의 교육권을 온전히 누리며 공정한 시작점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현장의 교사로서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4.

유보통합 시대,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대표 김주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김주리입니다.

저는 10여 년간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대표로서 제주의 장애영유아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과 돌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장애라는 서로 다른 장애 특성을 가진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두 아이 모두 장애통합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교육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저는 연구자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실천했던 교사, 교육을 선택했던 부모,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연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미 있는 발제를 해주신 최윤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유보통합의 핵심을 '같은 아동, 동일한 교육권'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 방향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같은 아동, 동일한 교육권'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지원의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에서는 영유아기의 조기개입이 이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배운 기술을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영유아 교육은 어느 한 기관의 역할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육기관, 그리고 다음 교육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아이의 발달을 함께 이해하고 이어갈 때 교육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을 부모로서도, 교사로서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영아기부터 다녔던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작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부모와 함께 기록하며 필요한 검사와 조기지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후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에서

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의 우수성이 아니라 기관 간 전문성이 아이의 발달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경험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는 10,105명으로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8,582명보다 많습니다. 제주 역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510명 가운데 323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 과정은 187명입니다. 이는 어느 기관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논의할 때 어린이집 역시 정책의 중심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육 현장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한 같은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기관에 따라 지원체계와 교육 여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같은 아동, 동일한 교육권'은 아직 완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학부조차 없습니다. 교육권은 법으로 선언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고 지원할 전문 인력이 현장에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의 전문성입니다. 장애영유아 교육은 개별화교육계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부모와 협력하며, 작은 변화를 다음 교육과정으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모두 전문성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처우는 단순한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영유아 교육의 질과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유보통합의 성과는 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장애영유아의 교육이 영아기부터 취학까지 얼마나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간 교원 양성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재교육과 연수체계를 통해 더욱 확장되어 유아특수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 보육, 의료와 복지가 분절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장애영유아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조기발견부터 취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사로 아이들을 만났고, 부모로 두 아이를 키웠으며, 지금은 제주의 장애영유아 가족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서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제때 받을 수 있고, 성장 과정에 맞는 지원

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같은 아동, 동일한 교육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논의가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 모든 장애영유아가 지역과 기관의 차이 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 5.

같은 아동, 동일한 교육권을 위한 현장의 제언

석나윤 (장애아전문 공립곰두리어린이집 장애영유아교사)

안녕하세요. 공립 장애아전문 곰두리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석나윤입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통합은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동에게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장애영유아 교육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에서 장애 영유아는 기본교육과정 운영시간, 교사 대 아동 비율, 행정 구조 측면을 보았을 때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에서 장애영유아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발제문에서도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사 확보와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도 매일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사 대 장애영유아의 비율은 1:3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명의 교사가 3명의 아동들을 맡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 손으로 아동들을 한 명씩 잡아도 한 손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보조교사 혹은 추가 인력이 따라야 현장체험학습 및 외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동들의 생활연령은 5~7세이고 독립보행이 가능한 아동들이 대다수이지만, 발달연령은 2~3세로 현저히 낮기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큼니다. 낙상, 이탈, 돌발행동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장애유형이라도 아동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기에, 단순한 아동의 수가 아니라 개별 아동의 지원 강도와 필요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2의 적절한 비율은 교사의 업무 및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은 충분한 교육 준비시간이 확보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기본교육과정 운영시간(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돌봄을 하는 시간)은 9시 30분에서 4시까지로 업무 시간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기본교육과정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이고, 남은 아이들은 돌봄 선생님께서 돌봄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고 나면 1시 30분부터 교사들은 서류업무, 교실 환경구성, 수업 준비, 연구 등 아동들을 위한 시간으로 쓰여집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일지 작성, 환경구성, 연구, 수업 준비가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IEP 수립과 평가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구조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연구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동의 특성과 필요를 깊이 고민하고, IEP와 수업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연구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교육과정과 이후 돌봄 시간을 구분하고, 교사의 교육 준비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 준비시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교육·보육·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기관인 만큼, 유보통합 이후에도 이러한 전문성이 유지되고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현장 교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함께 반영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의 이야기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교사들은 유보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게 맞는지, 진행이 되지 않을것인지 소문만 있고 현장에서의 와닿는 체감이 없기에 더욱 어려운 이야기로만 느껴집니다. 단순한 통합을 넘어 교사 개인에게는 일자리, 자격에 관한 문제로 미래에는 현재의 내 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 불안감을 느끼는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교사는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유보통합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교사들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유보통합 시대

오늘 발제에서 말씀하신 '같은 아동에게 동일한 교육권'이 현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목소리도 함께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6.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정립을 위한 제안

신명옥 (장애아전문 헤림어린이집 원장)

I. 문제 제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을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특수교육 지원체계는 이러한 법적 규정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의무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되는 특수교육 관련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입법 목적과도 상충되며, 동일한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지원체계를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II. 현행 법체계의 구조적 한계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면서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 또는 각급학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 법적 지위와 지원체계 간 불일치

법률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지만, 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교육지원의 근거가 미흡하다.

둘째, 교육행정의 이원화

장애영유아는 동일한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재원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반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 중심의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특수교육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교육권 보장의 형평성 문제

동일한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교육여건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특수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Ⅲ.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의 법적 근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구축은 특정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1.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교육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권은 단순히 교육기관에 재학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포함하는 기본권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교육부의 특수교육 지원체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책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특수교육 전달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정비라고 볼 수 있다.

2. 헌법 제11조 평등원칙과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동일한 특수교육대상 유아라 하더라도 유치원에 재원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반면, 장애아전문어린이

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장애 정도나 교육적 요구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에서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등원칙은 동일한 사항은 동일하게, 다른 사항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동일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게 교육기관의 유형만을 이유로 국가의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현행 제도는 합리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IV. 정책적 시사점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특수교육 전달체계 안으로 포함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와도 부합한다.

특히 장애영유아의 교육은 보육과 교육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기보다 교육권 보장이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V. 결론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면서도 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지원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정의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제2조 제12호의 각급학교 정의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제3조 제1항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은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기관으로 인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헌법상 평등원칙과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과제이다.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견

정혜원 (감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와 공립유치원 특수교사를 모두 경험한 교사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특수교사가 되기 전 사립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제 학급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유아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담임교사로서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문제행동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교수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로서 학급의 모든 유아를 함께 돌봐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애유아 한 명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애유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수교육을 공부하였고,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여 현재는 공립유치원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특수교육은 단순한 관심이나 경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수교사는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을 지원하며, 보호자와 상담하고,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하는 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끊임 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발표 자료에서 제시한 '같은 아동, 동일한 교육권'이라는 방향에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장애영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일반학급과 어린이집에도 많은 장애영유아가 생활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체계가 모든 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발표 자료에서 제안한 특별양성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의 전문성은 단기간에 갖추기 어려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일반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부족함을 느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장애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낮추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교사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지만, 경험만으로는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운 양성과정을 운영한다면 충분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엄격한 자격 검증을 통해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토론회의 제목인 '같은 아동, 동일한 교육권'이라는 문구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같은 아동에게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또한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교육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애영유아는 어디에서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7.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제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조선경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은 아이에게 동일한 교육권'이라는 원칙 아래 유보통합 시대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최윤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발제에서 제안하신 법과 제도의 정비, 장애영유아 지원 전담부서 설치, 그리고 영유아특수교사(가칭) 양성체계 구축은 유보통합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의 교원양성체계 만으로는 부족한 특수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활용한 한시적 특별양성과정과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위한 특별양성과정을 제안하신 점은 매우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정책보다 현장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장애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교사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위기는 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것 이전에 장애통합보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보통합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어린이집의 유아반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유치원으로 이동하고, 어린이집은 영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유아 통합반 교실에 비장애아 인원이 부족해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관은 생존을 위해 특별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늘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장애통합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30년 넘게 현장에서 축적해 온 완전통합보육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애영유아가 또래와 함께 성장하며 배울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

온 교육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법과 제도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현장은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유보통합의 시간을 가장 힘겹게 건디는 사람들은 장애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논의 뿐만 아니라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동육아공동체 어린이집 교사대회에서 '국가책임보육의 시작은 교사 인건비 100% 국가 지원'이라는 제안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사가 행정과 운영 걱정 없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유아기,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영유아에게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행정과 재정이 이원화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과 재정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애영유아도 기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유보통합 3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십시오.

둘째, 어린이집 관련 사무를 교육청으로 조속히 이관하고 행정과 재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주십시오.

셋째, 장애통합어린이집과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같은 국가 기준 아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얹혀서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아이들은 제도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함께, 보육현장도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아 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논의한 내용들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장애영유아 한 명 한 명이 어디에서 생활하든 차별 없이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진짜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생각함에 접속해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서명 참여 방법

1. QR코드를 스캔합니다.
2. 교육부 '유보통합 생각함'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4.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5. 제목에 '유보통합 3법 개정 요구'라고 입력합니다.
6. 내용에 아래 예시 문구 중 하나를 적고 등록합니다.

안내 문구 예시

1. 아이들을 위한 진짜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2. 시범사업보다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3. 책임 있는 유보통합을 위해 3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4.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3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5. 혼란 없는 현장 운영을 위해 조속한 3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6. 교육·보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해 3법 개정에 동의합니다.

QR 스캔



QR코드는 교육부 공식
'유보통합 생각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접속 경로: 교육부 > 국민참여·민원 > 참여·소통 > 유보통합 생각함